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0. 10. 20.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316
----------	-----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0. 5. 강남구청장(일자리정책과)
- 나. 상정의결
  - 제28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 (2020. 10. 20.)
  - “수정가결”

### 2. 제안설명 요지(기획경제국장 : 김희주)

- 가. 제안이유
  - 고용없는 저성장 기조의 지속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 구정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날로 확대되는 일자리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일자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일자리정책 기본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일자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안 제5조~제6조)
  - 일자리위원회 및 실무자 협의체 운영(안 제7조~제15조)
  - 취·창업지원시설 설치(안 제16조)
  - 업무의 위탁(안 제17조)

-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18조)

####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지방재정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 기 타
  - 입법예고(2020. 9. 4. ~ 9.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 언론보도에 의하면 제조업 등의 자동화·무인화 영향으로 국내 산업의 취업유발 계수가 매년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 없는 성장’ 추세가 한층 굳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음.

- 또한 급속한 고령화와 출산률의 감소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55년~63년생)의 대량 은퇴로 근로가능 인구의 구성에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으며, 고용효과가 높은 제조업·건설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산업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음.

- 이러한 인구구성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청년층, 경력단절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일자리의 질적 개선이 함께 요구되고 있음.

-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산업연관표’를 보면 2018년 취업유발계수<sup>1)</sup>는 10.1명으로 매년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는 바 2015년 11.4명에서 2018년 10.1명임. 취업유발계수가 하락하고 올해는 신종 코로나19 충격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용난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양질의 일자

1) 취업유발계수: 생산이 10억원 늘어날 경우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취업자 수를 의미함.

리 창출에 정책적 역량을 쏟고 있으며 많은 자치단체에서도 기업유치와 4차산업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적극적으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우리 구에서도 일자리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정의)에서는 “취약계층”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sup>2)</sup>에 따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이 조례가 기본조례의 성격으로 다양한 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해됨. 한편 조례는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결부되어 해석되고 집행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법규체계를 이루고 있는 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다른 조례와 적용의 우선순위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따라서 이 조례안은 일반법적 성격의 기본조례임을 감안하여 예시<sup>3)</sup>와 같이 제3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3) <예시>

조 다음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4조(일자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서는 5년마다 일자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본계획 내용에 ‘고용안정’ 이나 ‘직업훈련’ 에 대한 사항도 포함하여 예시4)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안 제5조(일자리창출 사업)에서는 구청장이 추진하는 일자리창출 사업을 열거하고 있으나 구청에서 시행하는 ‘공공일자리사업’ 도 포함하여 예시5)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안 제6조(취업지원 사업)에서는 구청장이 추진하는 취업지원 사업을 열거하고 있으나 예시6)와 같이 다른 사업도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 안 제7조(일자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는 자문기관인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다만, <예시>7)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에서는 위원회 구성을 20명 이내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 설명이 필요해 보이고 제4항 중 ‘위원의 임기’ 는 위원회 전체 구성이 아닌 위원 개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성격이 달라 조항을 분리하여 <예시>8)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창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가칭<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

4) <예시>

3. 고용안정이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예시>

2. 공공일자리사업 및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

6) <예시>

2.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양성 사업
3. 취업정보제공 및 알선 상담 사업
4. 취업박람회 개최 및 참가

7) <예시>

**제7조(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일자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종합적인 일자리정책 협력체계 구축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이하 생략)

8) <예시>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안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부터 제12조(위원의 해촉)까지는 일반적인 위원회 운영사항으로 보임. 다만, 위원회 간사와 회의록 규정은 누락되어 예시9)와 같이 신설하여 명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안 제13조(실무자 협의체) <예시>10)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실무자협의체를 두려는 사유에 대한 설명은 필요해 보임.

- 안 제16조(취·창업지원시설)에서는 강남구가 설치 및 운영하는 공공시설인 취업지원시설과 창업지원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설의 종류, 명칭 및 위치 등 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특정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조례에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기본조례의 성격을 감안하여 훈시적·선언적 의미로 이해되나 취업 및 창업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바람직하다고 하겠음. 따라서 예시11)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짐.

- 안 제17조(업무의 위탁)에서는 제16조(취·창업지원시설)의 지원시설을 별도의 조례로 설치·운영하려면 예시12)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짐.

- 안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에서는 2018.12.14.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바 유사한 기능을 하는 강남구일자리위원회를 새로 설치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보임.

---

#### 9) <예시>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④ (생략)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정책과장이 된다.
- ⑥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10) <예시>

##### 제13조(실무자협의체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자협의체를 둘 수 있다.

- ② 실무자협의체는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일자리사업 관련 기관, 단체,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 ③ 그 밖에 실무자협의체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11) <예시>

##### 제16조(취업·창업지원시설) ① 구청장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취업 및 창업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창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12) <예시>

##### 제1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사무의 일부를 일자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해당 조례안에 대한 필요성은 동의하나 강남구민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이 조문에 기재 되어 있지 않은 것에 아쉬움이 있으며 특히 취업·창업지원시설에 앞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사업을 지원 및 육성하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전제 조건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해당 부서에서 시설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원회 위원 수 및 기타 조문을 수정 및 삭제하고자 하는데 의견은.

○ 구에서는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조례안을 제출한 것이나, 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시설 설치 및 위탁 부분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 후에 개정안 제출 등을 검토하겠으며, 그 외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안에 동의하도록 하겠음.

#### **5. 토론 요지 : “생략”**

####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끝.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316호

제안일자 : 2020.10.20.

제 안 자 : 행정재경위원장

### 1. 수정이유

- 위원회 운영 및 취업·창업지원시설의 위탁 관련 조항을 수정 및 삭제하고 일부 조문의 자구를 입법체계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

### 2. 수정주요내용

- 일자리창출 관련 다른 조례와의 우선순위 규정 마련(안 제4조)
- 강남구 일자리위원회 위원 수 관련 조문 수정(안 제9조)
- 위원회 임기 및 실무자협의체의 구성 조항 신설(안 제10조, 제15조)
- 위원회 사무처리 관련 조항 신설(안 제12조)
- 취·창업지원시설 및 업무의 위탁 조항 삭제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기본 조례안 전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구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창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일자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5년마다 일자리정책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방향
2.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고용안정이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일자리창출 사업)** 구청장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
2. 공공일자리사업 및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
3.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
4. 창업 지원 사업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
5. 어르신,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사업
6.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 사업
7. 그 밖에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취업지원 사업)**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용지원 사업(구인·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양성 사업
3. 취업정보제공 및 알선 상담 사업

4. 취업박람회 개최 및 참가
5.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일자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종합적인 일자리정책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위원장이 일자리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어르신,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일자리 사업 소관 국·과장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강남구의원
3. 지역 일자리창출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정책과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

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실무자협의체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자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자협의체는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일자리사업 관련 기관, 단체,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실무자협의체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자 협의체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 각 호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9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일자리정책에 따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기업 등과 일자리정책 관련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의안 번호	316
----------	-----

제출년월일 : 2020. 10. 5.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일자리정책과

## 1. 제안이유

고용 없는 저성장 기조의 지속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 구정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날로 확대되는 일자리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일자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나. 일자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 다.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안 제5조~제6조)
- 라. 일자리위원회 및 실무자 협의체 운영(안 제7조~제15조)
- 마. 취·창업지원시설 설치(안 제16조)
- 바. 업무의 위탁(안 제17조)
- 사.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18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0.9.4. ~ 2020.9.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구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일자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5년마다 일자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방향
2.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일자리창출 사업)** 구청장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
2.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
3. 창업 지원 사업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
4. 어르신,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사업
5.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 사업
6. 그 밖에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취업지원 사업)**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용지원 사업(구인·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양성 및 알선 상담 사업
3.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4. 어르신,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5.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종합적인 일자리정책 협력 체계

를 구축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일자리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어르신,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일자리 사업 소관 국·과장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강남구의원
3. 지역 일자리창출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실무자 협의체)** ① 구청장은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일자리사업 관련 기관, 단체,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실무자 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자 협의체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취·창업지원시설)** ① 구청장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의 관할구역 안에 취업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2. 취업지원 교육
3. 채용박람회 등 취업정보 제공
4.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의 관할구역 안에 창업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유망한 창업자(예비창업자, 재창업자 포함)의 발굴·육성
2. 창업 보육공간 지원,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3. 창업자금 및 전시·판매장 등 마케팅 지원

4. 그 밖에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의 일부를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취·창업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취·창업지원시설을 취·창업관련 전문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 각 호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9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일자리정책에 따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기업 등과 일자리정책 관련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실효적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일자리 관련 정책의 근거를 자치법규에 마련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제1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

### 4. 작성자

- 일자리정책과 지방행정서기 최상문 (02-3423-5565)